

수신인 이 름: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장님

주 소: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수유동, 강북구의회)
전 화: 02-901-4511~13

발신인 이 름: 오동근린공원 토지소유자모임 대표 장순임

(번동 산27-42번지의 46필지 소유자모임 36명대표)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LG에클라트 904호
전 화: 010-8700-1080

제 목 “오동 근린공원의 도시공원구역 지정 반대 및 비오톱 지정해제 요청 및 토지주 대안 제시”

1. 서울시의 지역발전 및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20년 7월 1일 일몰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의견 1. 일몰제에 대한 추경예산 및 본예산 요청

민원인은 2018. 6. 8. 오동근린공원 추경예산 및 본예산 민원요청 한 바와같이 서울시와 강북구 및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에 추경예산 및 본예산 요청을 하여야 좀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수십년간 똑같이 예산부족만을 회신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자료 1: 2018.6.8. 추경예산요청 민원]

의견 2. 시민들의 인식조사 공원투자가 중요하다

장기미집행 실효를 대비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 표1를 보면 “공원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서울에서 공원이 중요하다 94%, 나의 일상생활에서 공원이 중요하다 82%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원.환경분야에 서울시 총 예산의 7%정도이고 그중 상하수도.기후환경을 제외하면 순수 공원.환경으로 전체예산의 1% 내외입니다.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을 하고 걸맞는 보상을 해 달라. [참고자료 2: 시민 인식도 조사 표1, 표2]

의견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강력반대 및 구역지정 관계 법률 재.개정 반대

“서울시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오동근린공원 토지주들 대부분이 지난 1965년경쯤부터 소유를 하여온 선량한 토지주들로서 2020년 7월 일몰제를 기다려온 토지주들에게 천천벽력의 너무도 가혹한 입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자연구역지정을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 하는바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일몰제에 위배되는 2030 도시계획안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토지주들도 서울시민이고 국민들입니다. 토지주들을 환경문제를 저해하고 미세먼지를 저해하는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법 제.개정시 공익사업등의 토지보상으로 편입된

토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20년 이내 발할 경우에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조항에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4. 도시계획시설 공원해제 요청

서울시는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은 건설부 고시 1966.2.6. 764,000㎡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1967.1.16. 1,167,896㎡로 변경고시되었으며, 1977.7.9. 1,471,600㎡ 결정 고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이후에 1985년 9월 28일 애시당초부터 오동근린공원 조성 계획부지를 과다한 면적을 조성계획으로 수립 1,532,959.4㎡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가 지구 665,190㎡, 나 지구 241,948㎡, 다 지구 442,418.4㎡, 라 지구 183.403㎡”를 수립하여 2008년도에 “가 지구에 대하여 완공이 되었습니다. 1966.2.6. 최초 결정고시 이후에 768,959.4㎡가 면적이 증가 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나.다. 라 지구에 대하여는 소송 패소지역만 보상하는등 미온적으로 보상하는등 “가 지구에 제외 한 나머지 나.다.라 지구는 공원조성계획에 필요한 임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 조성된 북서울 꿈의 숲 관리비용만으로도 강북구의 재정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바, 조성계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 및 공원지정면적 축소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의견 5. 근린공원조성계획의 “면적 축소 요청”

위 의견2와 같이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과다하게 면적이 편입되어 조성계획인가가 난 근린공원조성면적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할 수 없는곳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면적 축소를 위한 변경인가 고시를 요청 합니다. 토지주들에게 196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적재산권 침해를 하였는바, 꼭 필요한 공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면적 축소하여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 요청은 당연한 요청으로 토지주들에게 더 이상의 행위제한을 가하는 행정 및 입법을 금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 6. 공원부지내 사유지 전체 면적 보상요청 및 예산확보 후 일괄보상 요청

서울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며 도로변에 접하고 공원시설이 설치되고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면적에 대하여면 우선보상지로 선정하여 일부보상을 하여 잔여지를 맹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지도 우선보상지 대상필지 였음에도 필지분할을 하여 우선보상대상지에서 제외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맹지를 만들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보상 행정임에도 굳이 맹지를 만들어 일부보상을 하려는 것은 나머지 잔여지를 맹지화시켜 행위제한을 2중~3중으로 받게 하려는 의도 임에 토지소유자는 전체보상을 요청하며 예산확보 되었을 때 전체보상으로 일괄보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7. 공원부지내 사유지 행위제한 완화 요청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지로 묶여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나무 한그루 심어보지 못하였음에도 서울시와 강북구는 토지주 허락없이 식목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이 수익성과 연관된 과실수등의 나무를 심고, 박물관. 자연학습장.도시농업.체험장.동물농장등의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8. 비오뜰 제도 해제 요청 및 서울시 조례 개정요청

오동근린공원은 토지이용계획상 1종주거지역이며 중로를 접하고 있어 희귀동식물이 살 수 없는 임야입니다. 서울시는 2015. 7. 1.자 비오뜰제도를 서울시조례로 제정으로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단 한번도 비오뜰제도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수렴 없이 어느날 갑자기 토지이용계획서상 비오뜰 등급으로 지정되어 2중적(도시계획시설 공원 과 비오뜰 지정) 행위제한을 받게되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임야 전락하고, 5년마다 비오뜰재조사를 10년으로 변경하는등 일몰제에 앞서 서울시의 무법행정은 점점 더 해가고 있는바, 토지주들은 강력히 비오뜰 해제요청 및 서울시 조례개정 요청으로 2중적 행위제한은 너무도 심한 사적침해 제도임을 밝힙니다. [참고자료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참조]

의견 9.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사용료 청구

서울시와 강북구는 공원관리 명목으로 수십년간 치산녹지산업 및 산림조림을 계속하여 운동기구설치 및 산책로 개설 및 조경석설치 및 조경수 식목등의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고 단 한푼도 토지소유주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년 토지주들에게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보유세 등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은 벌금에 처하면서, 각종 시설 설치 및 그 시설을 위해 나무를 고사시키기 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으로써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이에, 국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한 소유주에게 그간의 사용료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의견 9. 2019.7.18.(목) 공청회 무효, 제안과 답변 공청회 요청

2030 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를 위한 이번 공청회는 “피해를 보고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공청회 였음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입장금지 및 공무원 집단 및 사설용역직원들의 공청회장 1/3이상 점거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이 제한되었고, 늦었다고 출입금지시키는 촌극과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는 공청회는 무효이고,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공청회는 무효로서 토지소유자들은 재공청을 요구한바 있고 담당과장은 재공청회를 하겠다는 확답한바 서울시내 공원부지 토지주들을 초청한 합리적인 공청회 개최요청 합니다.

의견 10.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해제 및 무효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회 의원들은 단 한번도 근린공원 토지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 해제”에 대한 권고제도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홍보를 한 적이 없으며, 해제 권고제도에 대하여 수많은 토지주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의 해제 권고제도에 대하여 토지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해제 권고제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 11. 국회의원.지방의원.시의원님들 “30년여년간 직무유기” 에 대한 책임 요청

“토지주들은 각 지방단체 의원님들 및 서울시 의원님들 및 국회의원님들 및 각 관계부처의 중앙 및 지방단체의 공무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97헌바26, 1999.10.21.)이후 30여년동안 중앙정부.서울시.지자

체는 예산부족 이유로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없이 시간낭비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겨우 1년을 남긴 시점에 예산부족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법 제.개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핑계에 불과 합니다. 2018년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순수 공원.환경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2%에 불과한 반면 복지예산이 35%에 달하고 다른분야에 포함된 복지중복 예산까지 합하면 55% 정도로 선심정책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원님들께서 30년전부터 2020년 실효를 대비한 예산수립 및 미조성 공원 조성 및 예산증액등의 노력을 하여 왔다면 1년을 앞두고 예산이 없어 구역지정을 한다는 공색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여년간 실효대비를 방치하여 온 책임이 큼에도 모든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감수하라며 공익을 앞세우는 정책이 아닌,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및 공원조성 면적 축소 및 구역지정 반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음에 토지주들에게 일정부분 감내하라는 설득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1: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2018년 도표 참조]

의견 12. 중앙 단체장.기초 단체장 및 국회. 지방의회의 “의지” 의 문제입니다.

2019년 현재에도 다른 도 및 지자체에서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대비하여 “공원 해제된 공원”이 많습니다. 강북구 구청장님과 강북구 의회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및 서울시 의회 의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및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에도, 타 시.도 및 지자체에서 공원해제를 하는 것을 강북구에서는 토지주들을 위하여 강북구민들을 위하여 공원 해제를 위한 공청회 및 해제요청, 예산증액 요청등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하여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2020년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노력없이 활동을 저조하다는 것을 강북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회기중 안전상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 타지역 공원해제 지역 참조]

의견 13. 중앙정부 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 주세요”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며 오히려 중앙정부와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총선자금 필요해서인지? 환경단체 단체등을 앞세우고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방패막이로 공원부지내 토지주들의 사적재산권을 공익사업의 명분을 앞세워 강탈해 가는 악법을 제정.개정하여 강탈을 합법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공원 조성의 혜택을 LH공사와 대기업에 주려 하고 있고, 채권조기상환을 빌미로 강탈해간 공원부지를 행위제한을 풀어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서울시, 국가에서 챙기려는 꿈수 정책임을 토지주들은 이미 파악을 하였습니다. 만에하나 이후 강탈해간 토지를 20년 이내 받을 하였을 경우에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제도도 법 제.개정 조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14. 토지주들은 범법자가 아닌 수십년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및 청와대는 토지주도 국민이고 시민들이므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들은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7 월 29 일

이 름: 오동근런공원토지소유자 모임 대표 장순임(인)

010-8700-1080

별첨: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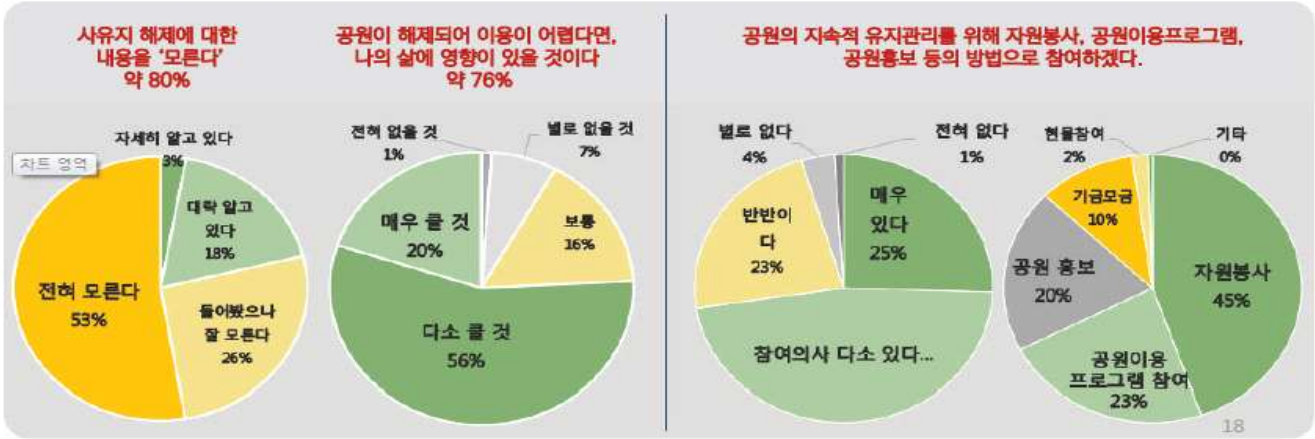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공원에 사유지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공원이 사라진다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유지 해제로 인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75.8%
 그러나 **사유지 해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 52.5%**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참여할 거예요”

도시공원 기능 유지관리 위한 참여의사 있다. 95%
 자원봉사, 공원이용프로그램 등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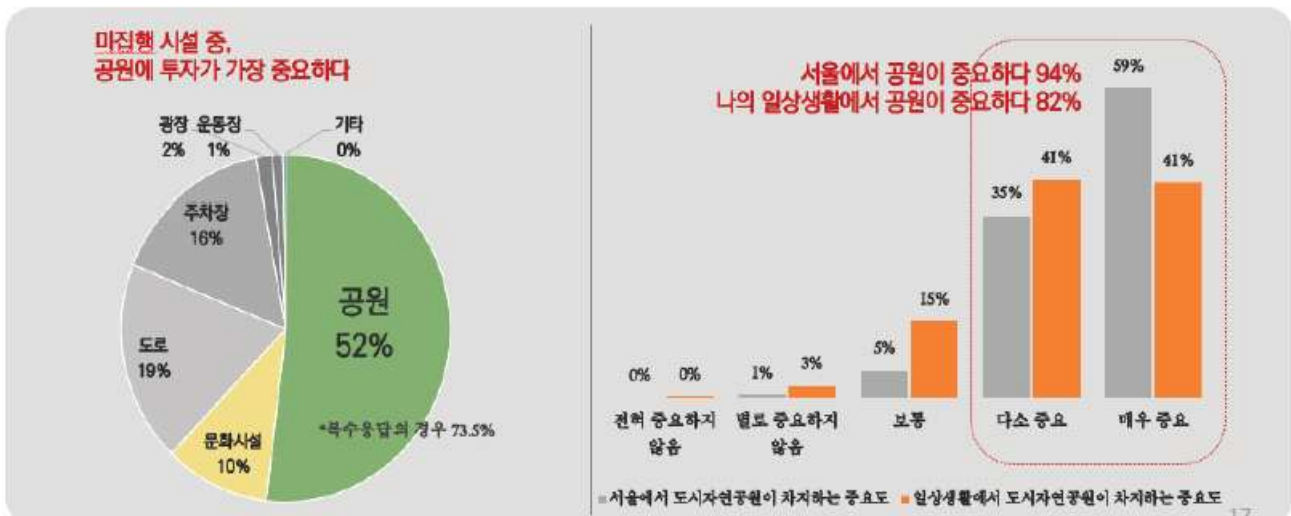
“공원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52%
 (중복응답의 경우,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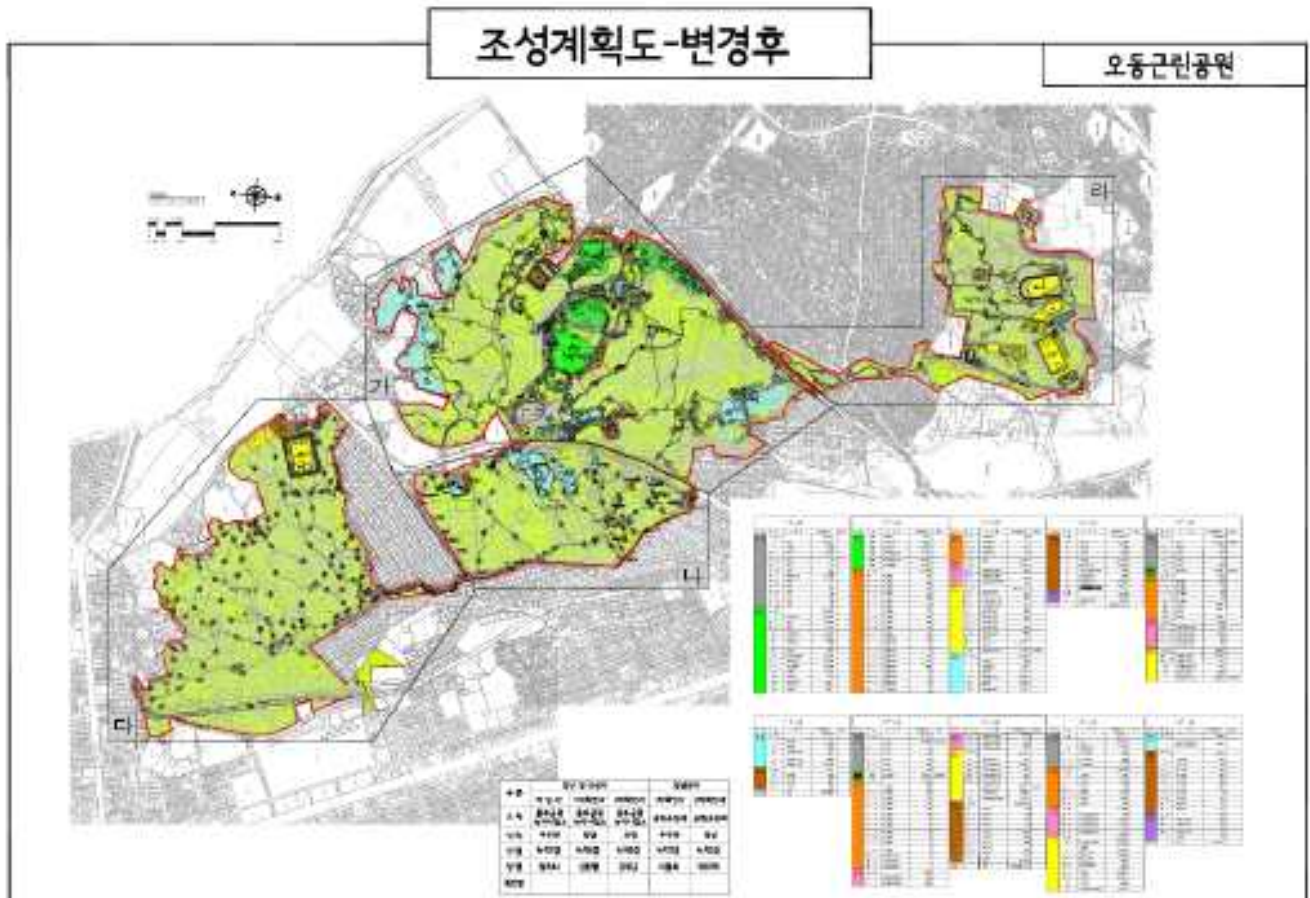
“도시공원은

서울에서도, 내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일상생활에서 **도시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
 (정신적 안정, 신체적 건강 유지와 공기정화 기능) **80%이상**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진 안 27-42 | | |
| 지적 | 임야 | 면적 | 2,905 m ² |
| 개발권사지가 (㎡당) | 181.100원 (2019/03)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 | |
| 지역지구별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별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영 - 송루1부(제 20M~25M)(합합) | |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별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결주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비오물1등급(2015.06.18)(처적) | | |
| 확인도면 |  | 법례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1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제2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자연녹지지역 <input type="checkbox"/> 정미구역 <input type="checkbox"/> 비오물1등급 <input type="checkbox"/> 송루1부(제 20M~25M) <input type="checkbox"/> 공영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경계 <input type="checkbox"/> 직선길계획대 | |
| | | 축척1 / 3000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 |



한눈에 보는 2018년 서울시 예산



올 10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주요 지역

(자료:지촌)

| 지역 | 공원명 | 면적(m ²) |
|--------|----------|---------------------|
| 서울 마포구 | 망월자매근린공원 | 2만 7000 |
| 대구 대봉동 | 대봉근린공원 | 6만 6000 |
| 경기 고양시 | 지정근린공원 | 41만 7000 |
| 경기 오산시 | 가장근린공원 | 42만 6000 |
| 경기 가평군 | 소총근린공원 | 12만 |
| 강원 양구군 | 총리근린공원 | 19만 9000 |
| 충남 아산시 | 인주근린공원 | 30만 9000 |
| 전남 장흥군 | 중앙근린공원 | 21만 9000 |
| 전북 임실군 | 1호 근린공원 | 58만 8000 |
| 경북 영천군 | 문외도시자연공원 | 30만 9000 |
| 경남 사천시 | 동림근린공원 | 9만 5000 |

※각 지자체의 정보공개 내용 취함.